등 록 번 호
지침서-0177-04

청렴韓세상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지침

2021. 3. 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 객 지 원 담 당 관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지침(공무원 지침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1년 3월 24 일

담당자 임 영 인 (인)

확 인(부서장) 정 영 숙 (인)

이 지침서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약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21년 3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1051
팩스번호: 043-719-1000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지침 (공무원 지침서)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지침서-0177-01	2018.4.1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지침 제정
지침서-0177-02	2019.1.21.	청원 채택을 위한 추천수 기준 마련 및 의견수렴 창구 확대 등
지침서-0177-03	2020.6.24.	인증수단 변경 및 홍보수단 변경 등
지침서-0177-04	2021.3.24.	안전검사 검토·심사 대상 확대 등

순 서

Ⅰ. 개요 ····· 1

Ⅱ. 세부 운영방안 ····· 2

1. 대상

2. 시스템 활용

3. 시스템 운영

4. 청원하기

5. 청원내용의 사전검토

6. 국민 추천

7. 청원 채택

8. 청원에 대한 조치

9. 청원에 대한 답변

Ⅲ. 지원체계 ····· 12

【붙 임】

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 ····· 15

2. 사전검토 절차도 ····· 16

Ⅰ 개요

1. 배경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자 한다.

2. 목적

가. 국민 참여를 통해 식·의약품 등의 선제적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한다.

나. 이 제도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으로 다수의 국민이 청원한 제품의 안전에 대한 검사 및 그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이 제도를 통하여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 중 다소비 제품, 온·오프라인상 이슈 제품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검사하고자 한다.

Ⅱ 세부 운영방안

1 대상

가. 다음 각 호의 청원은 청원 추천 대상에 해당한다.

1) 온·오프라인상 이슈가 되고 있어, 검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

* 예시) 생리대의 휘발성 유해물질로 인체 부작용 발생 등

2) 소비트렌드 변화, 일시적인 유행 등으로 소비가 급증하여 국민 다수가 그 안전성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

* 예시) 편의점 도시락 소비 증가, 다이어트 식품 인기 등

나. 다음 각 호의 청원은 청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중복 청원한 경우에 그 최초 청원 외의 나머지 청원

2)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식약처 또는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3) 질의민원, 정책 제안이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특정 제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 예시) A사 ○○ 과자 구매하여 섭취 중 이물 발견 조사 필요 등

2 시스템 활용

가. 구축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배너 링크 등으로 연결하여 대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의 진행과정은 ① 제도소개, ② 청원하기, ③ 청원목록(국민추천), ④ 채택청원(조치 중), ⑤ 완료청원, 총 5단계로 구성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 진행과정>

메뉴명	세부 내용
① 제도소개	청원 대상, 청원·추천 방법 등 안내
② 청원하기	로그인 및 청원 내용 작성
③ 청원목록 (국민추천)	청원 목록을 제공하여, 국민이 내용을 보고 공감 시 '추천'
④ 채택청원 (조치 중)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추천으로 선택되면 검사 실시 (필요시 점검)
⑤ 완료청원	조치된 청원결과를 공개

청원하기 세부메뉴
로그인 * SNS 계정·휴대폰번호 개인인증 활용 분야선택 1) 제조/수입/해외직구 2) 농축수산물/식품/건강기능식품/기구용기포장/위생용품/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기타 청원내용 작성

3 시스템 운영

가. 고객지원담당관(이하 '시스템 운영자'라고 한다)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에 국민 다수가 요청하는 제품의 안전에 대하여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여 답한다는 제도 취지를 설명한다.

나. 또한, 청원 대상, 요건 및 국민추천 투표가 진행되는 청원의 경우 그 청원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다. 시스템 운영자는 국민이 청원 목록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청원 내용에 공감하는 경우에 '추천' 단추를 클릭(한 청원 당 1인 1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국민추천 방법을 안내한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안내 〉

매일 먹고 쓰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궁금하거나 불안하신가요?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청원하고 추천해 주십시오!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책임지고 검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민원, 정책 제안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신고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99) 등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청원하기

가. 시스템 운영자는 국민이 네이버, SNS 계정(카카오톡)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스템 운영자는 국민이 청원을 작성하는 경우 청원할 내용에 따라 분야(대분류: 제조/수입/해외직구, 소분류: 농축수산물/식품/건강기능식품/기구용기포장/의약품/화장품/위생용품/의약외품/의료기기/기타)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에 따라 국민이 추천 시 관심분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식약처는 추후 소관부서 지정, 통계 처리 등에 손쉽게 활용 가능함

다. 시스템 운영자는 국민이 청원 내용을 작성할 때 공지된 청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에 6하 원칙에 따라 청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안내 문구 〉

◇ **운영 기본방침**

- 제안한 청원은 청원대상 여부 검토 후 추천게시판에 게시됩니다. (근무일 기준 1~2일 소요)
- 추천기간은 각 청원별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진행됩니다.
- 국민추천 투표가 진행되는 청원은 수정과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 추천은 청원 당 1인 1회 가능합니다.
- 특정업체, 특정제품을 지칭하는 내용은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질의민원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청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중복 청원한 경우 국민 추천이 분산되지 않도록 최초 1개만 남기고 그 나머지 청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허위사실·타인의 명예 훼손 문구는 삭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또는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5 청원내용의 사전검토

가. 시스템 운영자는 제안된 청원을 추천대상으로 게시하기 전에 그 청원 내용을 사전 검토(세부절차 : 붙임 2 참조)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였거나, 폭력·선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허위사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2)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중복 청원한 경우에 그 최초 청원 외의 나머지 청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식약처 또는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특정 업체명·제품명이 포함되어 있는 청원인 경우 그 업체명·제품명을 숨김 처리할 수 있다.

5) 제안한 청원 내용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가 숨김, 삭제 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나. 시스템 운영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을 24시간 운용하되, 청원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청원 내용이 근무시간 내에 별도 게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청원 추천 사이트에 공지한다.

다. 시스템 운영자는 청원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제품군을 별도 기재한다.

라. 부처 또는 부서 간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청원으로서 국민 다수가 섭취 또는 사용하여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청원의 경우 기획조정관 주관으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추천 대상 여부를 정한다.

6 국민 추천

가. 시스템 운영자는 국민 청원 목록 및 내용을 게시판 형태로 제공하되, 날짜순·추천순·분야별로 청원 목록 및 내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국민추천은 '청원목록'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공감할 경우에 '추천' 클릭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추천기간은 각 청원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 시스템 운영자는 국민 다수가 추천하여 선정된 청원은 '채택된 청원' 게시판으로 이동시켜 분류하고, 국민 다수의 추천을 얻지 못한 청원은 주기적으로 목록에서 삭제한다.

  * 채택되지 않은 청원이 게시판에 남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방지

라. 시스템 운영자는 추천기간이 끝난 후 유사 또는 동일 청원의 누적 추천수를 확인·관리 및 분야별 통계 등 청원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7 청원 채택

가. 시스템 운영자는 추천수가 2,000건 이상인 청원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군에 대한 분과위원회에서 검사 필요성, 검사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 청원내용 분석을 통해 공정서 시험항목 및 국민이 불안해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심의위원회 개최시 추천수가 2,000건을 넘는 청원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청원 중 가장 많은 추천수의 청원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총괄·전문분과 등)에서 검사 필요성·타당성을 심의하여 국민청원 안전검사 실시 대상으로 선정·채택할 수 있다.

1) 심의 대상 기간 중 추천수 상위에 해당 하는 청원

2) 심의 개최일 기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유사·동일 청원 중 누적 추천수 상위 청원

* 청원 빈도수 및 추천수의 누적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3) 당해년도 반기 단위로 미선정된 청원 중 추천수 상위 청원

- 단, 국민 추천이 저조한 경우 식의약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와의 소통채널인 '국민소통단'의 의견수렴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등에서 논의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심의하여 채택할 수 있다.

다. 채택된 청원이 2건 이상인 경우, 검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8 청원에 대한 조치

가. 채택된 국민청원에 따라 해당 제품군의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본부 소관부서는 평가원, 지방청 등과 협조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한 후 수거·검사한다.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나. 국민청원에 따른 검사 수행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수립

검사대상 제품을 소관하는 본부의 부서는 제품군 전반에 대한 수거·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품군 현황, 검사범위 및 수거검사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고객지원담당관, 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2) 수 거

본부 및 지방청 등에서는 제품군에 해당하는 품목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 시에는 인터넷 구매 등을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검 사

해당 제품을 소관하는 본부 부서에서 검사를 주관하되 평가원, 지방청, 검사기관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의 검토를 우선 실시하고, 기준규격·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검사방법, 위해 평가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필요 시 각 지방청을 제품별 시험 특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 : 무균시험, 서울청)

4)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을 소관하는 본부 부서는 청원에 따른 검사 결과를 평가원,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한다.

* 타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경우(생산단계에 대한 수거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와 공동조사를 실시함

** 검사는 특정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제품군'으로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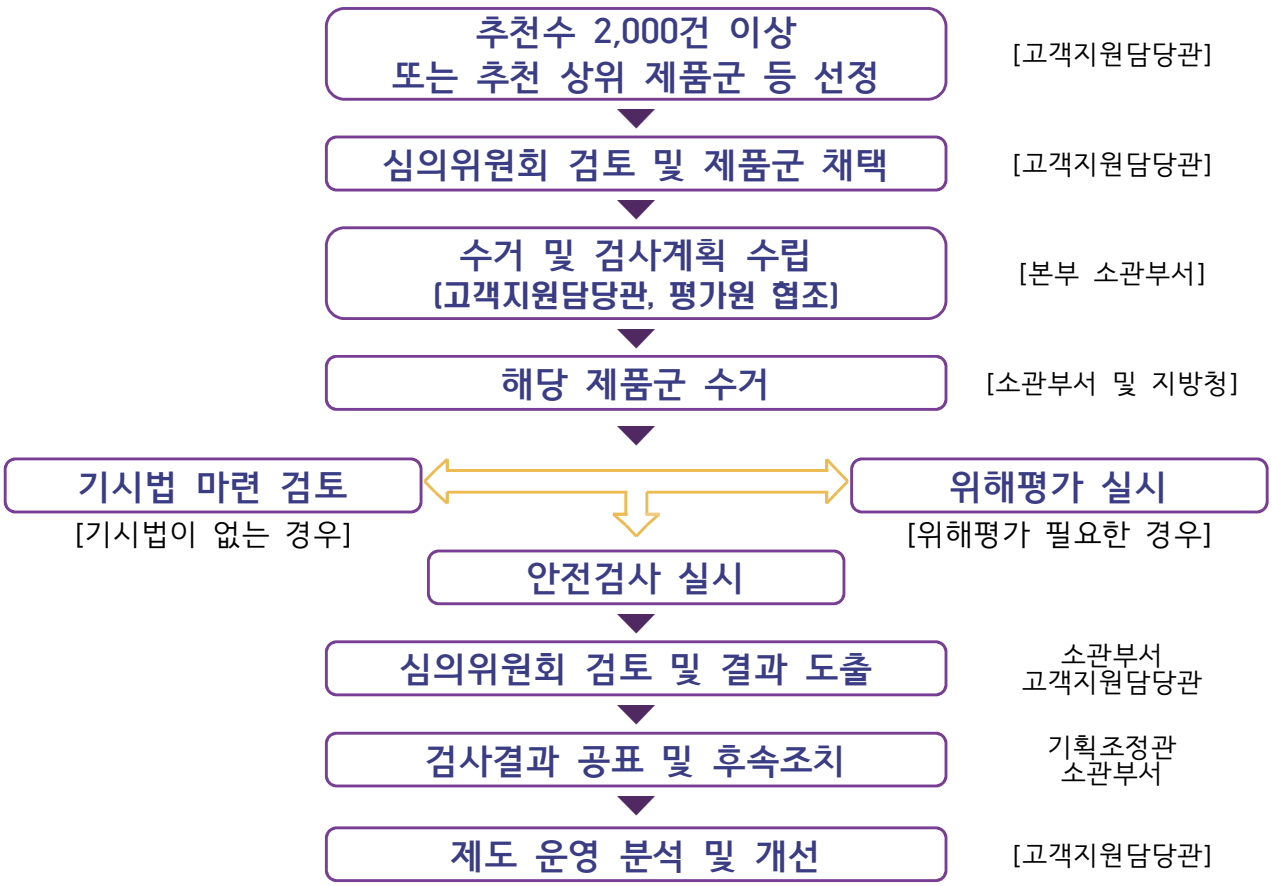
다. 본부 소관부서는 기준규격·시험법이 없는 제품에 대한 청원인 경우 조치 계획을 우선 답변하고, 연구사업이나 위해평가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라. 본부 소관부서는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한 청원인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도 또는 기 조치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한다.

마. 철저한 검사 등을 위해 청원에 대한 조치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기준규격·시험법이 있는 청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 진행 상황은 '수거·검사 진행정보'를 통해 수시로 공개

<안전검사 절차>



바. 검사결과 도출시 결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다.

9 청원에 대한 답변

가. 시스템 운영자는 청원에 대한 답변 시 각 청원별로 기획조정관 또는 해당 청원 내용의 소관 국장 등이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는 동영상을 함께 게시한다.

나. 시스템 운영자는 청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청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별도 메뉴에 목록화 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Ⅲ 지원 체계

1 대국민 홍보

가. 본부 소관부서와 대변인은 SNS 등을 통해 청원조치 과정을 진행 단계별로 국민에게 공유한다. 아울러, 해당 청원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 식약처 블로그, 페이스북, '식의약 어벤저스' 등 기존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

나. 정보화담당관은 식약처 누리집에 '국민청원 안전검사' 청원창구 배너를 마련한다.

다.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약칭(안심청원제)을 사용할 수 있다.

- 시스템 등 공식적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사용하고, 보도자료 등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시 공식명칭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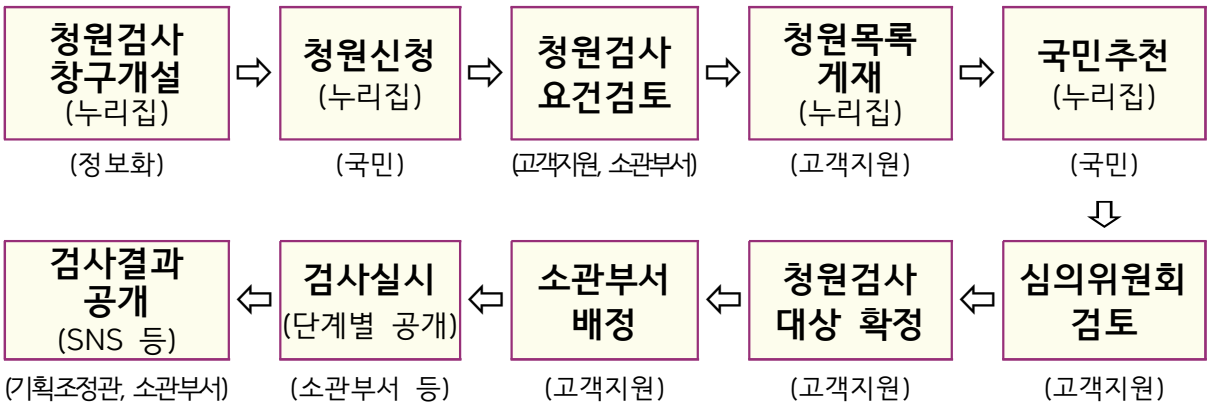
2 업무 체계

관련 부서 간에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원활하게 운영한다.

< 부서별 업무 >

부서명	소관 업무	비고
고객지원담당관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주관 ‣ 청원 요건 검토 및 검사대상 확정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및 담당부서 배정 등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반 운영	**총괄**
정보화담당관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스템 관리·운영	**시스템**
대변인	‣ 유튜브,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홍보	**홍보**
소관부서, 평가원, 지방청 등	‣ 분야별 검사업무 수행	**검사**

< 운영 절차 >



* 시스템 운영자는 **제도전반의 지속관리** (만족도 조사 등)

3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

가. 다수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내용과 관련된 제품 중 검사대상 제품의 선정 및 조치 타당성 논의를 위하여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 등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을 따른다.

4 국민 만족도 확인

가. 시스템 운영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 만족한 부분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한다.

나. 또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안되는 많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식약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붙임 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절차

진행	청원 창구	주요 내용
청원 등록 및 확인	1 공지사항	○ 청원요건 * 질의 민원, 정책제안, 특정 업체·제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1399' 이용 안내 * 타사 비방, 욕설 등의 문구는 삭제 ○ 청원 처리 절차 * 청원요건에 부합하는 청원에 대해 30일동안 국민추천 진행하여 다수가 추천 시 채택하는 원칙
	2 청원하기	○ 로그인 * SNS 계정 또는 휴대폰 번호를 통한 개인 인증 ○ 청원 작성 및 요건 검토 * 청원 분야(대분류, 소분류) 선택 후, 6하 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저장 * 청원 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청원 게시
의견 수렴	3 청원목록 (국민추천)	○ 청원 전체 목록 공개 * 날짜 순/추천 순 선택 정렬 가능 / 30일간 공개 ○ 국민 추천 * 청원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추천' 클릭
채택 조사	4 채택청원	○ 다수 추천으로 청원 검사 대상 제품군 채택 * ▲추천수가 2,000건 이상인 청원 ▲추천수 2,000건을 넘는 청원이 없는 경우, 매 분기 별 추천수 상위 청원 중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제품군 등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검사방법 심의 ○ 조사 진행 상황 공개 * 진행상황은 '수거검사 진행정보'를 통해 수시 공개
결과 발표	5 완료청원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검사결과 심의 및 조치결과 공개 * 조치 결과, 답변 영상 등 게재

붙임 2 사전검토 절차도


[기준 검토]
[답변 요지]
① 정책 제안, 법령 제·개정 등인가요? (민원, 정책질의, 법령 등 사항)
예 →
정책제안, 법령개정 등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② 식약처 소관 제품인가요?
아니요 →
청원내용이 식약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③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하고, 품목허가 등을 한 제품인가요? * 유통기한이내 제품여부 등
아니요 →
미허가(미등록), 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은 '국민신문고' 또는 '139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④ 안전에 대한 검사 요청인가요? * 효능·효과, 유효성에 대한 사항 제외
아니요 →
청원 내용이 안전검사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추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
⑤ 수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계되는 제품 또는 업체인가요?
예 →
현재 청원 내용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니요
⑥ 동일인이 동일사항으로 30일내에 다시 청원한 사항인가요?
예 →
현재 청원내용은 추천 진행 중이므로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니요
⑦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사항인가요?
예 →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또는 '1399'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불가
↓아니요
⑧ 욕설·비속어, 폭력·선정성, 특정업체·제품명 또는 비방이 포함되었나요?
예 →
삭제·숨김
청원 내용 중 일부 욕설 및 비속어 내용 등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요
청원게시 및 추천